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법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15.(수) 조선일보, “공공기관은 ‘사용자’, 지자체는 아니다? 노봉법 기준 제각각”

- 최근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엇갈린 '사용자성' 판단을 계속 내리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이전까지 노동위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접수된 9건에 대해선 모두 “사업장 안전이나 인력배치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지자체에 대해선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나온 첫 기각사례다. 노동위가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덜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해야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2. 설명 내용

- 노동위원회가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사용자성은 인정하지 않고 공공기관만 사용자성을 인정하려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령 및 이에 따른 해석지침·매뉴얼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 해당 사건마다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음
- 총리의 ‘정부의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법적 보완’과 관련한 발언도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며,
 - 일단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임
- 앞으로도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안착되고, 원·하청 간 상생의 교섭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강승현	(044-202-761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서기관	유현경	(044-202-7609)
	중앙노동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범석	(044-202-8231)
	교섭대표결정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형	(044-202-8242)

